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임금보장 강화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건설사의
임금인출 제한 + 근로자 계좌
송금만 허용

1단계 국토부 공사 전면시행 '17.12월~

2단계 전체 공공공사 의무화 '18년~

민간공사: 유사시스템 활용 시 입찰가점 부여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채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3개월치 채불임금 지급

공공·민간 모든 공사에
가입 의무화

보장한도 1,000만원 (3개월 평균 임금 상당액)

운영기관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등

적정임금제 추진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을 발주자가 보장

'18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시범사업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매년 10개씩 2년간 사용자 단체 →
객관·중립적기관

2020년부터 본격 시행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보험
가입률 제고

공무원가 반영요율↑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현장여건
개선

현장 화장실, 탈의실,
편의시설 등 설치 개선

퇴직공제
내실화

납부액: 日 4,200원 → 5,000원
대상공사: 공공 3억원 → 1억원 이상
민간 100억원 → 50억원 이상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

대여대금
보장 강화

퇴직공제
가입특례부여

보증제도 개편
(개별계약단위 ▶ 현장단위)

보증 미가입 처벌 강화
(과징금, 영업정지)

채불대금 지연이자제



직접 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

설계·엔지니어링 일자리 개선

시공사
감질 근절

기술력 중심
입찰제도

발주자가
적정설계비
지급여부 확인
(턴키·민자사업)

종합심사낙찰제

기술평가 ↑

가격평가 ↓

숙련인력 확보

기능인등급제 도입



출어진 경력정보 일원화 (근로자 공제회, '18년)



직종·경력 등에 따른 등급 부여 ('19년)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반영 추진 ('20년)

전자적 근무관리제도(전자카드제)



사회보험
정보



퇴직공제
정보



근무기간
정보

전자카드

- 단계적 도입
- 01 국토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18년)
 - 02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19년)
 - 03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20년)

교육훈련 강화

거점 훈련기관
선정·지원

수도권 우선 지정 ▶ 타 권역
단계적 확대

훈련인원

8,000명 ▶ 12,000명

노무관리책임 강화

불법외국인력 퇴출

집중단속 강화,
단속인력 증원 등

불법업체 제재 강화

불법하도급
2진 아웃제 등

원도급 노무관리평가



하도급자

근로자

원도급자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